

# 변경대비표(일반및자펀드)

## 1. 대상 펀드:

no.	펀드명	운용역 변경	모펀드 운용역 변경	투자 대상 자산 추가	모펀드 투자 대상 자산	환매 수수료	결산	변동성	변경 사항
1	미래에셋자산관리 TIF 혼합자산자투자신탁	○	주 1)	-	-	-	○	-	-
2	미래에셋 100 세시대 QV 퇴직연금 40 증권자투자신탁 1 호(채권혼합-재간접형)	-	주 4)	-	주 1)	-	-	-	10)
3	미래에셋 OCIO-DB 표준형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주 1) 주 2)	-	주 2)	-	-	-	-
4	미래에셋개인연금펀드솔루션 40 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채권혼합-재간접형)	-	주 5)	-	-	-	-	-	-
5	미래에셋개인연금평생소득 TIF 혼합자산자투자신탁	-	주 1) 주 2)	-	주 2)	-	-	-	-
6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 40 증권자투자신탁 1 호(채권혼합)	-	주 2)	-	-	-	-	-	-
7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주 2)	-	-	-	-	-	-
8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자투자신탁 2 호(주식-재간접형)	-	주 2)	-	-	-	-	-	10)
9	미래에셋밸런스 TRF 성장형혼합자산자투자신탁(재간접형)	-	주 3)	-	-	-	-	-	10)
10	미래에셋베스트펀드컬렉션증권자투자신탁 1 호(주식-재간접형)	-	주 1)	-	-	-	-	-	10)
11	미래에셋연금저축베스트컬렉션증권자투자신탁 1 호(채권혼합)	-	주 1)	-	-	-	-	-	10)
12	미래에셋전략배분 TDF2025 혼합자산자투자신탁	-	주 1) 주 2)	-	주 2)	-	-	○	-
13	미래에셋전략배분 TDF2030 혼합자산자투자신탁	-	주 1) 주 2)	-	주 2)	-	-	-	-
14	미래에셋전략배분 TDF2035 혼합자산자투자신탁	-	주 1) 주 2)	-	주 2)	-	-	○	-
15	미래에셋전략배분 TDF2040 혼합자산자투자신탁	-	주 1) 주 2)	-	주 2)	-	-	○	10)
16	미래에셋전략배분 TDF2045 혼합자산자투자신탁	-	주 1) 주 2)	-	주 2)	-	-	○	-
17	미래에셋전략배분 TDF2050 혼합자산자투자신탁	-	주 1) 주 2)	-	-	-	-	-	-
18	미래에셋전략배분 TDF 솔루션혼합자산자투자신탁	-	주 1) 주 2)	-	주 2)	-	-	-	10)
19	미래에셋퇴직연금베스트펀드컬렉션 20 증권자투자신탁 1 호(채권혼합-재간접형)	-	주 4)	-	주 1)	-	-	-	10)

20	미래에셋퇴직연금베스트펀드컬렉션증권자투자신탁 1 호 (채권혼합-재간접형)	-	주 4)	○	주 1)	-	-	-	8), 9), 10)
21	미래에셋펀드솔루션 40 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채권 혼합-재간접형)	-	주 5)	-	-	-	-	-	-
22	미래에셋평생소득 TIF 혼합자산자투자신탁	-	주 1) 주 2)	-	주 2)	-	-	-	-
23	미래에셋맵스아시아퍼시픽부동산공모 1 호투자회사	-	-	○	-	○	○	-	9), 10)
24	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	-	○	-	-	-	○	10)
25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배당프리미엄증권전환형자투자 신탁 1 호(주식혼합)	-	-	○	-	-	-	○	10)
26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성장유망중소형주증권전환형자투 자신탁 1 호(주식)	-	-	○	-	-	○	○	10)
27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다이나믹 50 증권자투자신탁 1 호(채권)	-	-	○	-	-	○	○	-
28	미래에셋 QV 글로벌자산배분 70 증권투자신탁 1 호(주식 혼합-재간접형)	-	-	-	-	-	○	○	-
29	미래에셋가치주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 1 호(주식)	-	-	-	-	-	○	○	-
30	미래에셋밸런스리츠부동산자투자신탁(재간접형)	-	-	-	-	-	-	○	10)

## 2. 변경 사항:

- 1) 운용역 변경
- 2) 모투자신탁 운용역 변경
- 3) 투자대상자산 추가
- 4) 모투자신탁 투자대상자산 추가
- 5) 환매수수료 삭제
- 6) 펀드 결산에 따른 재무정보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
- 7) 투자위험등급 관련 변동성 값 등 업데이트
- 8)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
- 9) 법 개정사항 반영
- 10) 이해관계인 삭제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명 변경

## 3. 효력발생예정일: 2023년 4월 14일 (금)

## 4. 변경 내용:

### 1) 운용역 변경

- 미래에셋자산관리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운용전문인력>	김윤정	김정욱

### 2) 모투자신탁 운용역 변경

주1)

미래에셋OCIO베스트컬렉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운용전문인력>	<u>김형우</u>	<u>김윤정</u>
----------	------------	------------

주2)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운용전문인력>	<u>김형우(책임), 김윤정(부책임)</u>	<u>김윤정</u>

주3)

미래에셋올웨더혼합자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운용전문인력>	<u>김형우</u>	<u>김정욱(책임), 정도옥(부책임)</u>

주4)

미래에셋외국인연금베스트펀드컬렉션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운용전문인력>	<u>김형우</u>	<u>김정욱(책임), 정도옥(부책임)</u>

주5)

미래에셋펀드솔루션40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운용전문인력>	<u>김형우, 고영서</u>	<u>김정욱(책임), 고영서(책임), 김다정(부책임)</u>

### 3) 투자대상자산 추가

#### [집합투자규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 15 조(투자대상자산 등)	<p>②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p> <p>1. ~2. &lt;생략&gt;</p> <p><u>3. &lt;신설&gt;</u></p>	<p>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p> <p>1. ~2. &lt;생략&gt;</p> <p><u>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u></p>

	<p>②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p> <p>1. ~2. &lt;생략&gt;</p> <p><b>3. &lt;신설&gt;</b></p> <p>4. 제 1 호 및 제 2 호에 준하는 외화표시 자산</p>	<p>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p> <p>1. ~2. &lt;생략&gt;</p> <p><b>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b></p> <p>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외화표시 자산</p>
--	---	---

[투자설명서]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 2 부. 8. 가. 투자대상	<p>[단기대출 주 1),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 &lt;신설&gt;</p> <p>&lt;생략&gt;</p> <p>&lt;신설&gt;</p>	<p>[단기대출 주1),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2), <b>환매조건부매수</b>]</p> <p>&lt;생략&gt;</p> <p><b>※주)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b></p>
	<p>[단기대출 주 1),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 &lt;신설&gt;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p> <p>&lt;생략&gt;</p> <p>&lt;신설&gt;</p>	<p>[단기대출 주1),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2), <b>환매조건부매수</b>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p> <p>&lt;생략&gt;</p> <p><b>※주)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b></p>

4) 모투자신탁 투자대상자산 추가

주1)

미래에셋퇴직연금베스트펀드컬렉션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나. (1) 투자대상	<p>[단기대출 주 1),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 &lt;신설&gt;</p> <p>&lt;생략&gt;</p> <p>&lt;신설&gt;</p>	<p>[단기대출 주1),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2), <b>환매조건부매수</b>]</p> <p>&lt;생략&gt;</p> <p><b>※주)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b></p>

주2)

미래에셋부동산인프라혼합자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
---------------------------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 기구에 관한 사항 1. 나. (1) 투자대상	[집합투자증권등]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 권  (80% 초과)	[집합투자증권등]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 권 <b>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b>  (80% 초과)

5) 환매수수료 삭제

[정관]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24조(환매수수료)	<p>①주식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제22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환매를 청구한 주주가 그 주식을 보유한 기간(당해 주식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회사재산에 편입한다.</p> <p>②환매수수료는 환매금액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p> <p>1. 90일 미만 : 환매금액의 5%</p> <p>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에는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p>판매회사는 주식을 환매하는 경우에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p>

[투자설명서]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환매수수료>	<p>주주는 이 투자회사 주식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 ①~②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주식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p> <p>① 수익자인 개인이 사망한 때 또는 수익자인 법인이 법정관리·화의신청·해산하는 때</p>	<p>주주는 이 투자회사 주식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 ①~②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주식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p> <p>① 수익자인 개인이 사망한 때 또는 수익자인 법인이 법정관리·화의신청·해산하는 때</p>

	② 정관 제 38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 "①"에 따른 환매수수료는 환매금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부과합니다. -90 일미만: 환매금액의 5% 위 "②"에 따라 주식을 환매하는 경우는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합니다.	② 정관 제 38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환매수수료 없음
--	---	--

6) 펀드 결산에 따른 재무정보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요약정보<투자비용>	-	<u>총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 업데이트</u>
제 2 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u>총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 및 증권거래비용 등 업데이트</u>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u>재무정보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u>
제 5 부. 4.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u>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업데이트</u>

7) 투자위험등급 관련 변동성 값 등 업데이트

펀드명	변경 전 등급	변경 후 등급	변경 전(%)	변경 후(%)
미래에셋QV글로벌자산배분70증권투자신탁1호(주식혼합-재간접형)	<u>3</u>	<u>4</u>	<u>11.26</u>	<u>9.98</u>
미래에셋가치주포커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	<u>1</u>	<u>2</u>	<u>27.95</u>	<u>20.84</u>
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	<u>2</u>	<u>3</u>	<u>18.63</u>	<u>13.03</u>
미래에셋밸런스리츠부동산투자신탁(재간접형)	<u>2</u>	<u>3</u>	-	<u>12.1</u>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배당프리미엄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주식혼합)	<u>2</u>	<u>3</u>	<u>18.6</u>	<u>13.09</u>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성장유망중소형주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주식)	<u>1</u>	<u>2</u>	<u>27.9</u>	<u>21.18</u>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25혼합자산투자신탁	4	4	<u>8.18</u>	<u>7.17</u>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5혼합자산투자신탁	3	3	<u>12.03</u>	<u>10.61</u>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0혼합자산투자신탁	3	3	<u>12.94</u>	<u>11.57</u>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5혼합자산투자신탁	3	3	<u>13.3</u>	<u>11.87</u>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다이나믹50증권투자신탁1호(채권)	5	5	<u>2.46</u>	<u>3.17</u>

8)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	------	------

제2조(용어의 정의)	<신설>	-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이라 함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제53조(고난도금융투자상품)	<신설>	이 투자신탁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9) 법 개정사항 반영

[집합투자규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13조(자산운용지시 등)	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 1 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한 경우 <u>투자신탁재산으로</u>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 64 조제 1 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한 경우 그 <u>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u>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투자대상자산 등)	-채권 <중략> <u>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u> <생략>  -자산유동화증권 <중략> <u>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u> <생략>	<삭제>
제17조(운용 및 투자 제한)	2. <생략> 나. <중략> <u>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u> <중략> <u>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u> <생략>	2. <생략> 나. <삭제>
제42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u>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u>  ②~③ <생략>  <신설>	①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 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u>수익자 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u>  ②~③ <생략>  ④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외의 사유로 수익자 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

[투자설명서]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2부. 8. 가. 투자대상	-채권 <중략> <u>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u> 또는 <생략>  -자산유동화증권 <중략> <u>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u> 또는 <생략>	<삭제>
제2부 8. 나. 투자제한	-동일종목투자 (예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나. <중략> <u>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u> 또는 <중략> <u>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u> , <생략>	-동일종목투자 (예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나. <삭제>

10) 이해관계인 삭제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명 변경

[투자설명서]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4부. 1. 가. 회사의 개요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 중 집합투자업자의 주요 이해관계인 현황 - <u>일반사무관리회사</u> : <u>미래에셋펀드서비스</u> - 신탁업자 : 국민은행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 중 집합투자업자의 주요 이해관계인 현황 <삭제>
제4부.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회사명: <u>미래에셋펀드서비스(주)</u>	회사명: <u>한국펀드파트너스(주)</u>

\*상기 변경사항에 대한 집합투자계약 및 정관 조항 번호는 펀드 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 변경 내용은 동일함

미래에셋자산운용(주)

**[별첨] 담당 투자운용인력의 경력 및 운용성과**

**1. 경력**

- 1) 성명: 김윤정 팀장
- 2) 주요경력
  - (99년~03년) NH투자증권 리서치팀
  - (03년~07년) 동부증권 리서치팀
  - (07년~11년) 와이즈에프엔 금융솔루션팀
  - (11년~16년) 멀티에셋자산운용 리서치팀
  - (16년~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 자산배분부문

**2. 운용현황(2023.03.31 현재, 설정액 기준 상위 10개 공모 펀드 나열)**

투자신탁명	설정일	설정액(백만원)
미래에셋글로벌 EMP 인컴배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2015-03-03	269,983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016-09-09	224,897
미래에셋하나 1Q 연금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2016-03-21	37,661
미래에셋참신한리밸런싱퇴직연금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2016-05-10	25,342
미래에셋 QV 글로벌자산배분 50 증권투자신탁 1 호(채권혼합-재간접형)	2016-03-14	21,403
미래에셋 QV 글로벌자산배분 30 증권투자신탁 1 호(채권혼합-재간접형)	2016-03-14	19,747
미래에셋 QV 글로벌자산배분 70 증권투자신탁 1 호(주식혼합-재간접형)	2016-03-14	18,071
미래에셋참신한리밸런싱연금저축증권투자신탁 1 호(채권혼합-재간접형)	2016-04-11	13,946
미래에셋연금동행안정형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2022-09-02	5,766
미래에셋연금동행성장형혼합자산투자신탁(재간접형)	2022-09-02	3,692

**3. 운용성과(2023.03.31 현재, 설정액 기준 상위 10개 공모 펀드 나열, 기간별 수익률, %)**

투자신탁명	1개월	3개월	6개월	설정 이후
미래에셋글로벌 EMP 인컴배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0.35	5.95	0.18	28.10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0.08	5.40	3.53	85.68
미래에셋하나 1Q 연금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1.54	3.33	1.61	38.42
미래에셋참신한리밸런싱퇴직연금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1.41	3.24	1.21	30.38
미래에셋 QV 글로벌자산배분 50 증권투자신탁 1 호(채권혼합-재간접형)	1.15	2.25	1.89	31.22
미래에셋 QV 글로벌자산배분 30 증권투자신탁 1 호(채권혼합-재간접형)	1.24	2.22	2.36	21.61
미래에셋 QV 글로벌자산배분 70 증권투자신탁 1 호(주식혼합-재간접형)	0.89	2.29	1.64	39.84
미래에셋참신한리밸런싱연금저축증권투자신탁 1 호(채권혼합-재간접형)	1.27	3.27	1.14	30.83
미래에셋연금동행안정형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1.21	1.89	-0.49	0.02
미래에셋연금동행성장형혼합자산투자신탁(재간접형)	1.42	2.13	-4.82	-3.76

**[별첨] 담당 투자운용인력의 경력 및 운용성과**

**1. 경력**

1) 성명: 김정욱 팀장

2) 주요경력

(08년~15년) 미래에셋자산운용 리스크관리

(15년~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 자산배분부문

**2. 운용현황(2023.03.31 현재, 설정액 기준 상위 10개 공모 펀드 나열)**

투자신탁명	설정일	설정액(백만원)
미래에셋전략배분 TDF2025 혼합자산자투자신탁	2017-03-13	1,000,608
미래에셋평생소득 TIF 혼합자산자투자신탁	2017-03-13	576,775
미래에셋전략배분 TDF2030 혼합자산자투자신탁	2017-03-13	556,414
미래에셋전략배분 TDF2045 혼합자산자투자신탁	2017-03-13	547,687
미래에셋전략배분 TDF2035 혼합자산자투자신탁	2017-03-13	423,599
미래에셋전략배분 TDF 솔루션혼합자산자투자신탁	2018-07-02	385,998
미래에셋전략배분 TDF2040 혼합자산자투자신탁	2017-03-13	278,202
미래에셋전략배분 TDF2050 혼합자산자투자신탁	2020-07-20	121,498
미래에셋개인연금평생소득 TIF 혼합자산자투자신탁	2019-03-20	76,589

**3. 운용성과(2023.03.31 현재, 설정액 기준 상위 10개 공모 펀드 나열, 기간별 수익률, %)**

투자신탁명	1개월	3개월	6개월	설정 이후
미래에셋전략배분 TDF2025 혼합자산자투자신탁	0.56	3.21	3.79	33.72
미래에셋평생소득 TIF 혼합자산자투자신탁	0.28	2.15	2.50	24.96
미래에셋전략배분 TDF2030 혼합자산자투자신탁	0.58	3.76	4.06	42.90
미래에셋전략배분 TDF2045 혼합자산자투자신탁	0.73	4.65	4.19	56.01
미래에셋전략배분 TDF2035 혼합자산자투자신탁	0.60	4.51	4.38	50.98
미래에셋전략배분 TDF 솔루션혼합자산자투자신탁	0.52	3.02	3.56	20.54
미래에셋전략배분 TDF2040 혼합자산자투자신탁	0.71	4.58	4.22	54.47
미래에셋전략배분 TDF2050 혼합자산자투자신탁	0.70	4.88	3.78	14.69
미래에셋개인연금평생소득 TIF 혼합자산자투자신탁	0.21	1.94	2.08	11.68

**[별첨] 담당 투자운용인력의 경력 및 운용성과**

**1. 경력**

1) 성명: 정도욱 선임 매니저

2) 주요 경력

(12년~15년) Ingensoma Arbitrage Ltd. / 선물옵션운용

(15년~17년) 이베스트투자증권 / 선물옵션운용2팀

(17년~21년) 국민연금공단 / 패시브투자팀(패시브포트폴리오 운용)

(21년~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 자산배분부문

**2. 운용현황(2023.03.31 현재, 설정액 기준 상위 10개 공모 펀드 나열)**

해당사항 없음

**3. 운용성과(2023.03.31 현재, 설정액 기준 상위 10개 공모 펀드 나열, 기간별 수익률, %)**

해당사항 없음

**[별첨] 담당 투자운용인력의 경력 및 운용성과**

**1. 경력**

1) 성명: 김다정 매니저

2) 주요 경력

(18년~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 자산배분부문

**2. 운용현황(2023.03.31 현재, 설정액 기준 상위 10개 공모 펀드 나열)**

해당사항 없음

**3. 운용성과(2023.03.31 현재, 설정액 기준 상위 10개 공모 펀드 나열, 기간별 수익률, %)**

해당사항 없음